



정책자료

# LPG용기관리방안 검토의견

한국LP가스공업협회

## 검토배경

LPG가격자유화('2001. 1. 1)이후 용기관리를 누가,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의 논란이 야기됨에 따라 협회 차원에서의 검토의견을 제시코자 함

## □ 법적근거

- 현행 LPG법상 용기관리주체에 대한 명시 조항 없음
  - 종전 LPG법(99. 2. 8이전)에서는 용기관리주체를 충전사업자로 명시
  - “종전 LPG법제12조④ LPG충전사업자는 용기를 산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보하고 안전하게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”
- 다만, 「LPG최고판매가격고시」상 충전소의

유통수수료에 용기관리비(약21원/kg)가 반영됨에 따라 충전소가 용기관리주체임을 간접 명시

- 한편, 2001. 1. 1부터는 상기 LPG최고판매가격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충전소가 용기관리주체라는 근거 상실

## □ 정책방향

- 산자부 가스산업과 의견

- 용기관리주체·용기관리비등의 문제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것이다
- 용기검사대상 여부가 충전단계에서 확인된다는 점 등으로 충전소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

### 〈강원지회의 질의에 대한 회신〉

- 질의(2000.10.31) : 용기관리주체?
- 회신(2000.11. 8)  
가격자유화시 용기관리비의 부담주체를 강제적으로 정할수 없음. 다만, 용기관리업무 자체는 충전소단계에서 시행하되, 동 비용은 충전소와 판매소간 협의·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
- 산자부 에너지안전과 의견  
- 「LPG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“안전공급계약 등의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기준 고시”에는 용기를 판매소가 소유·관리토록 하였음

### 〈시범실시계획〉

시범지역 : 서울 동작구·중랑구·강북구·강동구, 부산 사상구, 대구 달서구, 충남 당진군, 인천 강화군, 광주 동구·북구

시범기간 : 2001. 1. 10 ~ 6. 30

- 일부 지역에 일정기간만 한정시행하므로 귀추를 지켜보아야 함

### □ 검토의견

- 제33차이사회(2000.12.15)에서 용기관리 문제가 기타 안건으로 제기되어 “충전소가 용기관리를 하지 않기로 결의”한바 있음
- 그러나 LPG가격이 자유화되는 2001. 1. 1부터 용기관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 제약이 있음
- 즉 판매업계의 용기관리 수용태세가 미비되어 큰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
- 소비자 불편이 초래된다는 점
- 특히 사회문제화 할 경우 충전업계가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음
- 따라서 당분간은 충전소가 용기관리를 계속 수행하되 용기관리여부를 가격에 반영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용기관리주체가 시장자율기능에 따라 판매업계로 이관되도록 함